



국인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 2009. 11. 3.
제공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 안 영 수
사무관 : 강 형 수
전 화 : 031-463-1566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09년 11월 4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계획

- 소비자가 믿고 다시 찾는 친환경농산물이 되도록 관리강화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09 면적기준 전국 농지면적 1,759천ha의 10.4%인 184천ha로써, 현재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 나누어서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업무는 농관원과 농관원이 지정한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비중
 - 면적 기준 : ('07) 6.9 → ('08) 9.9 → ('09.10) 10.4%
 - 인증량 기준 : ('07) 9.8 → ('08) 12.0 → ('09.10) 13.5%
 - 인증 종류별 비중('09.10 기준)
 - 면적 : 유기(13천ha, 7%), 무농약(63, 34), 저농약(108, 59)
 - 인증량 : 유기(135천톤, 6%), 무농약(952, 40), 저농약(1,283, 54)
 - 민간인증 비중(면적기준) : ('07) 51 → ('08) 65 → ('09.10) 61%

- 품목 유형별 비율('09.10)
 - 곡류(48%), 과실류(30), 채소류(14), 특작류(2), 기타(6)
-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관계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해당 인증농장 불시 점검, 농약·비료 살포여부 및 장부 확인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 수거조사 건 : ('07) 9,353 → ('08) 13,965 → ('09.10) 9,753
 - 기준위반 건 : ('07) 184 → ('08) 309 → ('09.10) 125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이 인증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고발 조치
 - 행정처분/고발 : ('07) 1,085/29 → ('08) 2,356/82 → ('09.10) 1,662건/107
-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농관원 뿐 만 아니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농관원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인증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의 건실성을 갖추도록 함

- 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심사원을 과거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나, 인증 건수를 감안하여 인증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게 함(구체적 기준 별도 정할 것임)
-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
- 인증기관의 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고 농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시 등
-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12월말까지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시료채취과정 등 인증심사의 적정성,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등 점검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단기,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임
- 또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됨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며, 기존 인증농가는 '15년까지 유효기간연장 가능
-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가 및 인증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1. 친환경농산물 개요

- 친환경농산물 : 농약이나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인증한 농산물에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로 표시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 인증표시 도형



- ① 유기농산물 :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
- ② 유기축산물 : 항생·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
- ③ 무농약농산물 :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이하 사용하여 생산
- ④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무항생제 사료 급여('07. 3 시행)
- ⑤ 저농약농산물 :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이하 사용 ('10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은 '15까지 기간연장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 54개소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 인증절차 :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
 - 영농일지 등 관련자료 검토 후, 농장을 방문하여 재배환경, 재배방법, 생산물 등을 심사
 - 인증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 및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정
-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품 생산과정(생산농장) 및 유통과정(유통업체, 판매장)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4.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현황

○ 농림산물

연도	구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2007	농가수(호)	7,507	31,540	92,413	131,460
	인증면적(ha)	9,729	27,288	85,865	122,882
	인증량(톤)	107,179	443,989	1,234,706	1,785,874
2008	농가수(호)	8,460	45,089	119,004	172,553
	인증면적(ha)	12,033	42,938	119,136	174,107
	인증량(톤)	114,649	554,592	1,519,070	2,188,311
2009.10	농가수(호)	9,342	59,174	114,180	182,696
	인증면적(ha)	12,898	63,382	107,986	184,266
	인증량(톤)	134,893	951,721	1,283,243	2,369,857

○ 축산물

연도	구분	유기	무항생제	계
2007	농가수(호)	99	664	763
	인증량(톤)	2,002	11,560	13,562
2008	농가수(호)	162	2,742	2,904
	인증량(톤)	11,207	137,079	148,286
2009.10	농가수(호)	84	3,694	3,778
	인증량(톤)	9,149	311,644	320,793

5.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10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인증취소	712	85	797	2,010	104	2,114	1,437	130	1,567
인증표시정지	254	34	288	189	53	242	77	18	95
고 발	2	27	29	11	71	82	11	96	107

- **인증취소** :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 **인증표시정지** : 인증을 받은 자가 경미한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일정기간(1월~6월)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 **고 발** :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생산자 포함) 비 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